

전기안전관리규정

제정 : 1995.03.01
개정 : 1998.05.01
개정 : 1999.10.18
개정 : 2001.03.01
개정 : 2006.03.01
개정 : 2008.12.17
개정 : 2011.11.22
개정 : 2017.07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10.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한다) 및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조, 동 시행규칙 제30조 및 「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」(이하 “고시”라 한다.) 제3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 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8. 05. 01., 1999. 10. 18., 2008. 12. 17., 2011. 11. 22., 2017. 07. 01., 2021. 12. 01., 2022. 10. 01.>

제2조 <삭제 2017. 07. 01.>

제2장 안전관리 운영체계

제3조(안전관리업무 조직 등) ① 안전관리사는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 계통 및 연락 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7. 01.>

② 전교직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,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7. 01.>

③ 전교직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7. 07. 01.>

- ④ 전교직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07. 01.>

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

제4조(안전관리 업무의 감독) ① <삭제 2017. 07. 01.>

② <삭제 2017. 07. 01.>

③ <삭제 2017. 07. 01.>

④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07. 01., 2021. 12. 01.>

1.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 업무·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
2. 전기설비의 이상 유·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
3.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, 정기점검, 정밀점검 계획
4.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·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
5.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 계획,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

제5조(안전점검 및 측정)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·정기점검·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 <개정 2017. 07. 01.>

②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[별표 1]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7. 01., 2021. 12. 01.>

③ 제2항에 따른 점검·측정 시 정밀(연차)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07. 01.>

④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·안전 및 생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·측정의 경우 부서 간 협의하여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07. 01.>

⑤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(연차)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.

제6조(점검결과의 판정) ① <삭제 2017. 07. 01.>

② <삭제 2017. 07. 01.>

③ <삭제 2017. 07. 01.>

④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7. 07. 01.>

1. 부적합 사항
 - 가.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- 나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
2.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
 - 가. 전기설비 설치,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
 - 나.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- 다. 수목, 토목, 건축 등의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 경우
 - 라.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

제7조(점검에 관한 기록·보존)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7. 01., 2021. 12. 01.>

1. 점검자
2. 점검 연월일, 설비명(상호) 및 설비용량
3. 점검 실시 내용(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,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)
4. 점검의 결과
5.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

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본 대학교에 비치하고,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7. 01.,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- ③ <삭제 2017. 07. 01.>
- ④ <삭제 2017. 07. 01.>
- ⑤ <삭제 2017. 07. 01.>

제8조(부적합설비 등의 조치)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결과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·개조·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07. 01.>

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07. 01.>

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(「전기공사업법」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.)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07. 01.> <개정 2021. 12. 01.>

④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7. 07. 01.>

제9조(계측장비 교정 등) ① <삭제 2017. 07. 01.>

② <삭제 2017. 07. 01.>

③ <삭제 2017. 07. 01.>

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·운용 업무를 위해 [별표 2]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. <신설 2017. 07. 01.> <개정 2021. 12. 01.>

제10조(전기설비의 운전·조작)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·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07. 01.>

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·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07. 01.>

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07. 01.>

제4장 안전관리 교육

제11조(안전관리 교육)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,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. <신설 2017. 07. 01.>

②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07. 01.>

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 교육이 수용가 또는 본 대학교 내에서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본 대학교 게시판 등에 교육 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07. 01., 개정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5장 전기사고 예방

제12조(안전장구의 사용)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7. 01.>

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, 사용법,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7. 01.>

③ <삭제 2017. 07. 01.>

제13조(위험표시) ① <삭제 2017. 07. 01.>

② <삭제 2017. 07. 01.>

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, 배전실,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.
<신설 2017. 07. 01.> <개정 2021. 12. 01.>

제14조(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) ① <삭제 2017. 07. 01.>

② <삭제 2017. 07. 01.>

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절차, 방법,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가이드에 따른다. <신설 2017. 07. 01.> <개정 2021. 12. 01.>

제15조 <삭제 2017. 07. 01.>

제16조 <삭제 2017. 07. 01.>

제17조 <삭제 2017. 07. 01.>

제18조 <삭제 2017. 07. 01.>

제19조 <삭제 2017. 07. 01.>

제20조 <삭제 2017. 07. 01.>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 대학교의 교명을 대원전문대학에서 대원공과대학으로 변경한다.<개정:2020.03.01>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 대학교의 교명을 대원공과대학에서 대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.<개정:2020.03.01>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 대학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.<개정:2020.03.01>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 대학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<개정:2020.03.01>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(고시 제3조 관련)

측정·시험항목	주 기						기록서식
	월차	분기	반기	연차	공사중	감리	
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	○	○	○	○	○	○	별지 제1호
저압 전기설비 점검							별지 제2호
- 절연저항 측정	-	-	△	○	-	-	
- 누설전류 측정	-	△	△	-	-	-	
- 접지저항 측정	-	-	○	○	-	-	
고압 전기설비 점검							별지 제3호
- 절연저항 측정	-	-	-	○	-	-	
- 접지저항 측정	-	-	-	○	-	-	
- 절연내력 측정	-	-	-	○	-	-	
변압기 점검	-	-	-	○	-	-	별지 제4호
- 절연저항	-	-	-	○	-	-	
- 절연내력, 산가도 측정(절연유)	-	-	-	△	-	-	
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	-	-	-	○	-	-	별지 제5호
예비 발전 설비	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	-	-	○	○	-	별지 제6호
	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	-	-	○	○	-	
	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	-	○	○	○	-	
적외선 열화상 측정	-	○	○	○	-	-	별지 제7호
전원품질분석	-	-	-	○	-	-	별지 제8호

[비고] ○ : 필수, △ : 필요시

※ 참고사항

1.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“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”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·정기점검·정밀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,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2. 점검 및 측정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은 각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·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3. 정밀(연차)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 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.
4.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·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·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,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.